

러시아 연해주 루스키 섬 및 칼리닌그라드주 악짜브리스키 섬 특별행정구역 (Специаль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районы, CAP)

관련 법률

- 2018. 8. 3. 인터내셔널 기업에 관한 연방법률(제290-FZ호) 제정(시행 2018. 12. 25.)
- 2018. 8. 3. 칼리닌그라드주 및 연해주 특별행정구역에 관한 연방법률(제291-FZ호) 제정(시행 2018. 12. 25.)

특별행정구역(CAP) 개요

구분	내용
대상	외국 법인/기관 · 단체(금융기관 제외)
소재지	연해주 루스키 섬 및 칼리닌그라드주 악짜브리스키 섬
관리회사	1. 연해주 루스키 섬: 극동개발공사(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РДВ») 2. 칼리닌그라드주 악짜브리스키 섬: 칼리닌그라드주 개발공사(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목적	법률상 목적은 투자 활성화와 연해주 및 칼리닌그라드주의 사회 · 경제적 발전이지만 사실상 러시아계 외국기업의 유턴 촉진 목적임
최소 투자요건	5,000만 루블 이상(19. 4. 9. 환율기준 약 760,000달러)
주요 혜택	1. 자산처분에 따른 이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2. 인터내셔널 기업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한 배당 소득세 5% 세율 적용 3. 러시아 외환규제법상 비거주자 지위로 인정되어 자유로운 외환 거래 및 결제 가능 4. 해운법 개정에 따라 특별행정구역에 설치되는 러시아 선박등록처에 선박등록(등록대상 선박에서 어선은 제외) ※ 러시아 특별행정구역으로 해외자산을 이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러시아 자국 기업인(일종의 유턴기업)에 대하여 해외자본 사면제도 1년 연장(현행 제도 2019년 3월 종료) → 러시아 정부 도입 검토 중



이승민 선임 외국변호사
(러시아)

T. 82-2-6200-1772
E. smlee@jipyong.com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19002, 43, Sivtsev
Vrazhek Lane,
Moscow, Russia

- Seoul |
- Suncheon |
- Busan |
- Shanghai |
- Ho Chi Minh City |
- Hanoi |
- Phnom Penh |
- Vientiane |
- Jakarta |
- Yangon |
- Moscow |
- Tehran |

특별행정구역 입주 요건

구 분	내 용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8. 1. 1. 이전 설립된 기업으로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 2. 특별행정구역 참여계약 체결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법인 3. 투자의향서, 특별투자계약,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 민관 파트너십 합의서 및 기타 약정에 근거하여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외국법인 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참관국(옵서버) 및/또는 머니발(MONEYVAL; 유럽평의회 자금세탁·테러자금 감시기구) 회원국에 등록(설립)된 외국법인 5. 인터내셔널 기업(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мпания)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최소 5,000만 루블 이상 투자 <p>※ 러시아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도 인터내셔널 기업 자격 부여 (러시아 기업의 최소 투자 요건은 외국기업과 동일)</p>
특별행정구역 입주자 지위 취득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행정구역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법인은 관리회사에 사업계약 체결 신청서(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필수)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법인) 상호, 추진사업 유형, 계약기간, 연락처 명기 - 신청서는 인터내셔널 기업에 관한 연방법률이 정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관리회사는 신청서 검토 후 사업계약 체결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약 체결 승인 시 관리회사는 동 결정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사업계약서(안)을 신청인에게 발송 3. 특별행정구역 입주자 명부 등재 사유는 본사이전(redomicilation) 절차에 따른 인터내셔널 기업 등록임 4. 관리회사는 인터내셔널 기업 등록일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특별행정구역 입주자 명부에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내셔널 기업은 특별행정구역 입주자 명부 등재일부터 특별행정구역 입주자로 인정
본사이전 (redomicilation) 절차에 따른 인터내셔널 기업 등록 시 제출서류	<p>관리회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터내셔널 기업 등록 신청서(법인등록 담당 중앙정부기관이 정한 서식 P18001) ② 외국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법인 정관(설립문서) 사본 ④ 외국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의한 법인종속법 변경 및 특별행정구역 내 설립되는 인터내셔널 기업 정관 승인 결의서 ⑤ 특별행정구역 내 설립되는 인터내셔널 기업 정관 ⑥ 외국법인의 최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사본(회계감사의견서 사본 첨부) ⑦ 외국법인의 대리인 권한을 확인하는 문서(위임장 등) ⑧ 외국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인터내셔널 기업 업무집행기구 선임 결의서

구분	내용
본사이전 (redomicilation) 절차에 따른 인터내셔널 기업 등록 시 제출서류	⑨ 외국법인의 최종수익자(beneficial owner) 리스트 ⑩ 인터내셔널 기업의 등록 결격사유 부재 진술 확인서 ⑪ 인터내셔널 기업의 조직형태가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발행 등록을 위한 필수서류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번역 및 공증 필수 → 등록기관은 관리회사로부터 상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등록 진행

시사점

-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자국 기업인들에게 자금 손실 및 기타 물질적 손실 없이 해외자산을 러시아 내 특별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러시아 내 특별행정구역 설치로 인해 러시아계 외국기업의 유턴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2019. 3.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1개 기업이 루스키 섬 특별행정구역에 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 En+를 비롯한 10여 개 기업이 등록을 진행 중임.
- 러시아 특별행정구역 내 설립되는 인터내셔널 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간소화 특혜 및 조세회피처 제공이라는 논쟁이 있음.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특별행정구역은 대규모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정보가 완전히 비공개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세회피처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인 반면 전문가들은 사실상 조세회피처에 있는 러시아 자금을 러시아로 유턴시키기 위해 러시아 내에 조세회피처의 혜택을 약간 가미한 지역을 만들고 이를 법으로 보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특별행정구역 입주자 지위를 위해서는 본사이전(redomicilation)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한국 기업을 비롯한 실제 외국계 기업에게 있어 매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외국법인뿐 아니라 러시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러시아 기업(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등)에게도 특별행정구역 입주가 허용되므로, 이미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러시아 자회사의 경우 투자구조를 검토할 의미는 있을 것으로 전망됨.